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 10. 1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10.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가. 제출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주요내용

1). 별표 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함
(안 제2조)

2)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표현 정비 (안 제3조 및 안 제5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규칙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4. 8. 8 ~ 2024. 8. 28.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년 11월 22일 개정되고 2024년 11월 23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 ‘상위법령 준용’ 조문을 ‘3,000원’으로 명시함.

나. 주요 개정 조문

- 안 제2조 별표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

단 규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한 것임. 이는 자치입법권 강화 차원의 개정 활동으로 위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표. 1 서울시 자치구 수수료 현황]

연번	자치구	현행	개정 예정	비고
1	강남구	3,000	3,000	
2	강동구	3,000	3,000	
3	강북구	3,000	3,000	
4	강서구	3,000	3,000	
5	관악구	3,000	3,000	
6	광진구	3,000	3,000	
7	구로구	3,000	3,000	
8	금천구	3,000	3,000	
9	노원구	3,000	3,000	
10	도봉구	3,000	3,000	
11	동대문구	3,000	3,000	
12	동작구	3,000	3,000	
13	마포구	3,000	3,000	
14	서대문구	3,000	-	검토중
15	서초구	3,000	-	검토중
16	성동구	3,000	3,000	
17	성북구	3,000	3,000	
18	송파구	3,000	3,000	
19	양천구	3,000	3,000	
20	영등포구	3,000	3,000	
21	용산구	3,000	-	검토중
22	은평구	3,000	3,000	
23	종로구	3,000	-	검토중
24	중구	3,000	3,000	
25	중랑구	3,000	3,000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시행일: 2024. 11. 2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